#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1127

제출연월일: 2015. 3. .

제 출 자: 중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 3년 이내 연장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구세의 감면기간을 3년 이내 연장(부칙 제2조)

나.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(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)

3. 근거법규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4조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

시행령」제126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 : 해당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 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라. 입법예고 : 2015. 1. 19. ~ 2015. 2. 9.(의견 없었음)

#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 중 "제47조제1항"을 "제126조제1항"으로 한다. 제13조 중 "제48조"를 "제127조"로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 나 부과·징수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####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감면 신청)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	제12조(감면신청) ①
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<u>제47조제1항</u>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	제126조제1 항
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 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감면자료의 제출)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8조를 준용한다.	제13조(감면자료의 제출)

#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 (의안번호 1127)

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5. 3. 4.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5. 3. 9.(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5. 3. 12.(목)

#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 : 김영국 행정지원국장)

○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라 3년 이 내 연장하고 그 밖에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# 3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구세의 감면기간을 3 년 이내 연장(부칙 제2조)
- 나.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(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서대성)

-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부칙 제2조에 의하면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음
- 2015년 3월 12일 현재 구제 감면 조례는 중지된 상태로 조례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,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의 소급적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

# 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